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498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2.

발 의 자:박 정·박상혁·유동수

송옥주 · 김영환 · 정성호

정동영 · 김주영 · 김성원

김성회 · 황정아 · 김용태

이양수 · 배준영 · 이기헌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, 이에 맞춰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(안 별표 2 제72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50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72.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